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59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 박주민·장종태·염태영

이기헌・조 국・전종덕

오세희 • 이병진 • 문정복

안태준 · 이재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0일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법정 재결기한인 60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행정심판위 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 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 도록 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 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 조의2 신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 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할 부본을 제외한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을 "답변서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답변서 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 후단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

료를"을 "자료와 관할 행정청에 대한 제1항제4호의 자료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이 법 준수 현황(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서의 처리 및 답변서 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4항,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④</u>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
	판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할
	부본을 제외한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내야 한
	<u>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	등의 접수·처리) ①
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	
0일 이내에 <u>심판청구서(제23조</u>	<u>답변서를</u>
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	
<u>다)와 답변서를</u> 위원회에 보내	
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4조의2(답변서 제출 요청 등)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저 ~ ③ (생 략)

④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 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 조제2항부터 <u>제4항까지의</u> 규정 을 준용한다.

⑤ (생 략)

제60조(조사·지도 등) ① 중앙행 저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2	<u>24</u>						
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	출 <u></u>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	<u>한</u>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에	게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u>한</u>						
<u>다.</u>							
②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1	항						
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						
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	여						
재결하여야 한다.							
세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1						
~ ③ (현행과 같음)							
4							
<u>제5항까지의</u>							
⑤ (현행과 같음)							
베60조(조사·지도 등) ①							

~ 3. (현행과 같음)
이 법 준수 현황(제24조제1

- ② (생략)
-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 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 집한 <u>자료를</u>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항에	따른	답변	<u></u>	제출기	<u>] 한</u>
	<u> 준수</u>	여부를	를 도	도함	하여야	<u>한</u>
	<u>다)</u>					
2	(현	행과 길	날음)			

자료와 관할 행정청에 대한 제 1항제4호의 자료를-----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1 항에 따라 조사한 자료와 제3 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